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3 선고 2019가단5405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특별대리인 C

2. D

3. E

4. C

5. F

변론 종결2020. 4. 22.

판결 선고2020. 5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 주식회사, D, E, C는 연대하여 90,435,364원 및 그 중 12,275,737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952,192,118원 및 그 중 119,811,001원에 대하여,

각 2019. 6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이 법원 2009가단342821 사건 판결금 일부 변제 후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.

판사이형주